

# 특용작물시설현대화(버섯, 녹차, 약용 등) 사업

## I 사업개요

### □ 목 적

-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

### □ 사업내용

-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·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·교체 등 현대화 지원

### 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  - 농업인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
  - 농업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    - \* 법인체 지원요건(전년도 1231일 기준) :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
  - 생산자단체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4호
- 녹차·약용작물 유통·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 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
- 우선지원
  -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, 수출 우수 농가
  - 화재·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
  -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
  -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 등(의무자조금 도입시)
  - \* 시·도 및 시·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·지원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지원 내용·품목 :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 노후재배사 개·보수, 노후기자재 교체·구입
- 지원 기준 : 국비 20%, 지방비 30%, 용자(이차보전) 30%, 자부담 20%
  - \* 용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  -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,000백만원, 개인 200백만원 한도
  - \*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, 개인 1,200백만원, 팡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,000백만원 한도
- '23년 예산: 11,180백만원(국비 2,236, 지방비 3,354, 용자규모 1,032, 자부담 등 4,558)

□ 사업 신청

- 장소 : 각 시·도(시·군)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 담당부서
- 신청기간 :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

□ 대상자 선정

- 선정기준 항목
  -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, 사업비 확보 가능성, 사업착수 가능성
- 선정 제외
  -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
  - 사업포기 : 향후 3년간 지원 제한
  - 사업이월 :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
-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(전년도 8월말)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원예산업과	과 장 유원상 사무관 최수빈 주무관 이혜빈	044-201-2231 044-201-2240 044-201-2242
지방자치단체	특용작물 담당과	특용작물 담당자	지자체 문의

### 1. 사업대상자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  - 농업인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
  - 농업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  - 생산자단체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4호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특용작물(버섯·녹차·약용작물 등)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  - ※ 법인체 지원요건(전년도 1231일 기준) :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,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
- 녹차·약용작물 유통·가공시설(저온저장고)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

#### <우선지원>

-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, 수출 우수 농가
- 화재·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
-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
-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 등(의무자조금 도입시)
- \* 시·도 및 시·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·지원

### 3.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

-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·보수, 기기 구입(유통·가공 포함) 및 교체
  - (※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,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)
  - \* 비닐재배사 개·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
  - 버섯 등 재배사 개·보수 및 증·개축, 기기 구입 및 교체

-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·보수 및 증·개축
-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% 범위 내 가능
  - \* 종균의 보급·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
-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
  - \*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
- 냉·풍해방지, 관수 시설, 차광막 시설 등
  - \*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(단,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)
- (버섯) 냉난방기, 자동화시설, 배지혼합기, 배지처리기(건조장치 포함), 탈병기, 자동입병기, 살(멸)균기, 종균기,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
- (녹차) 채엽기, 건조기, 덩음기, 유념기, 분쇄기, 포장기 등
- (약용작물) 세척기, 건조기, 절단기, 선별기, 석발기, 포장기, 탈피기 등
  - \* 녹차·약용작물의 경우, 유통·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
- 토지매입비, 임차료,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, 농자재,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
  -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, 시설·장비 임차료, 하우스형 재배사(양송이 제외) 등
  -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, 농자재, 소모성 자재, 저온차량, 저온저장고, 예냉시설 등 유통·가공시설 제외
  -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
- 농·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(※단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,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)
-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(생약)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
  - ※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

#### 4.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

- 국고채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, 금융기관 차금(이차보전)
- 지원형태 : 국비 20%, 융자(이차보전) 30%, 지방비보조 30%, 자부담 20%
  - 융자조건 : 고정 연이율 2.0% 또는 변동금리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   - \* 변동금리 :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,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
    - \* 대출은행 : 농협(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)

- ※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·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(관련 : 농어업재해대책법,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)
  - 농가단위 피해율 30% 이상 50% 미만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1년
  - 농가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2년

## 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개소당 총사업비 : 법인 1,000백만원, 개인 200백만원 한도
  - 재배사 개·보수, 증·개축은 3.3m<sup>2</sup>당 100만원 기준  
(단,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,200백만원, 팡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팡이버섯을 수출하는 팡이버섯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\*에 한해 2,000백만원 한도)
  - \*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/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
-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% 이내 지원(법인에 한해 적용)
  - (예시) 총사업비 1,000백만원인 경우, 재배사 개·보수비 등 400백만원, 장비·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
  - 재배사 개·보수 없이 장비(기기)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, 농가는 200백만원(아래 <예시> 참조)
  - \*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,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

<예시> 재배사 개·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 최대규모	국비 (20%)	융자 (30%)	지방비보조 (30%)	자부담 (20%)
법 인	600	120	180	180	120
농 가	200	40	60	60	40

## 6.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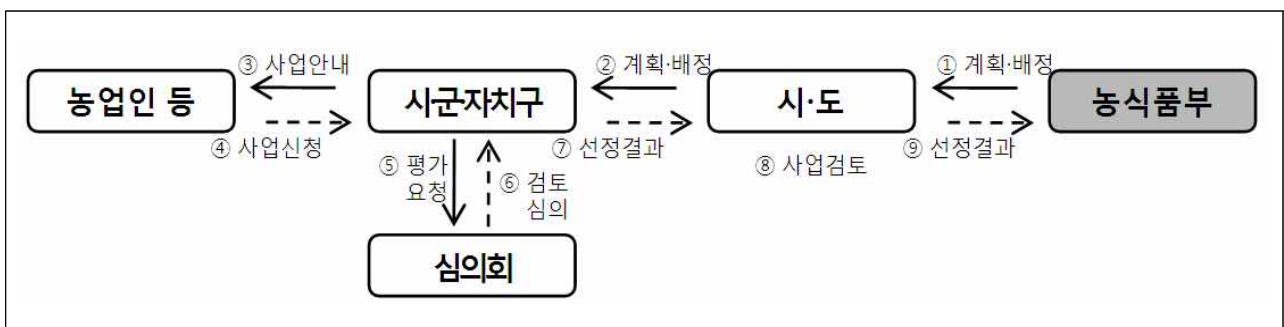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(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)
-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에 신청(※단,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

여부 사전 확인)

- 사업비 집행·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,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
-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, 지역실정 등을 감안, 지자체장이 검토·결정하여 시행

### Ⅲ

## 사업추진체계



- ※ 사업신청, 대상자선정, 자금신청·배정,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운용 병행
- ※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»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»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

### 1. 사업수요 파악단계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(전년도 3월)

#### 시·도

- 시·군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(전년도 3월)
-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(전년도 5월)

#### 시·군

- 시·군은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그 현황(별지 제2호 서식)을 시·도에 제출(전년도 4~5월)

## 2. 예비사업자 선정단계

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(전년도 7월)
- 시·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(전년도 9월)
- 지원조건, 지원자금의 사용용도, 사업신청 절차·방법, 세부계획 수립·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시달(전년도 12월)

### 시·도

- 시·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(전년도 7월)
- 시·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(전년도 8월)
- 시·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(전년도 9월)
-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산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(전년도 10~12월)
- 시·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·군·자치구 시달(전년도 12월)
  -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, 신청방법 등 안내

### 시·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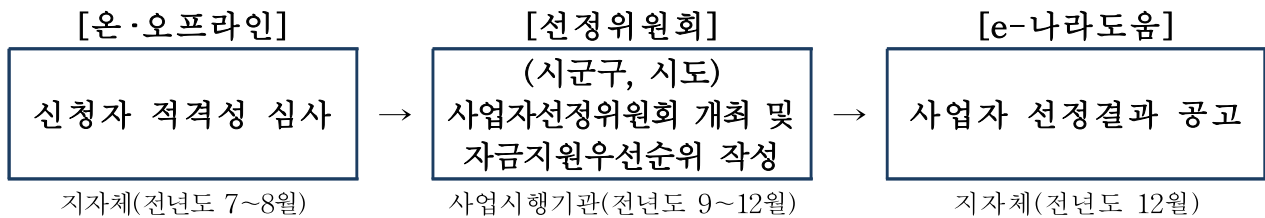
- 특용작물(버섯, 약용, 녹차 등) 농업인·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, 신청방법, 중도포기·지침(규정)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
-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사업계획서(별지 제1-1호 서식) 등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서류, 선정결과\*(별지 제3호 서식)를 시·도에 제출(전년도 8월)
  - \* 사업 점검표(붙임 제1호 서식)에 따라 적정 사업자 선정  
사업자 선정기준표(붙임 제2호 서식)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
  -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,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,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중복·편중지원 여부,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(「기본규정」 제35조)
  - 사업신청서·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
  - \* 대상정보 : 농업인정보, 농지정보(농지주소, 농지면적), 품목정보(재배품목, 재배면적), 시설정보
  - ※ 산림버섯 등 임산물(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)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
-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(전년도 9월)

-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(전년도 10~12월)

**사업대상자**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제출(전년도 7월)
- 신청서 제출기관 : 각 시·도(시·군)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) 담당부서
  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사업계획서(별지 제1-1호 서식), 용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·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
  - \*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

**3. 최종사업자 선정단계**



**농림축산식품부**

- 시·도에 가내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요청(전년도 10월)
- 시·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)
- 지원조건, 지원자금의 사용용도, 사업신청 절차·방법, 세부계획 수립·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시달(전년도 12월)

**시·도**

-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·요건,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,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(전년도 11월)
- 시·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·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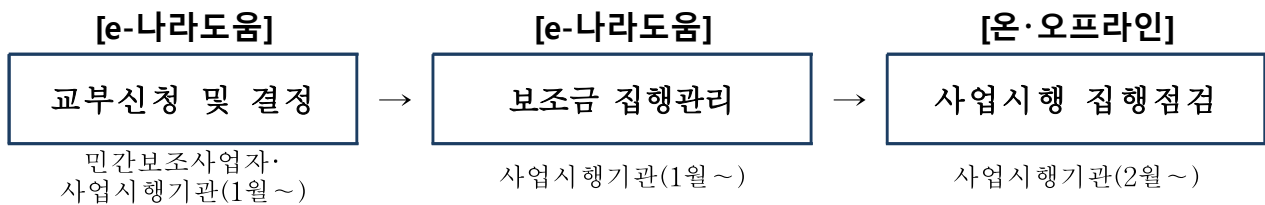
**시·군**

-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·요건,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, 사업 추진의사를



-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·도에 보고(전년도 11월)
-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·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(전년도 9~11월)
- \* 시·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(Agrix)에 등록·관리(시·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)
- 시·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(전년도 12월)
  - 지원계획, 대출방법,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착수 시도

#### 4. 자금배정단계

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,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
- 시·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(재연장)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

#### 시·도, 시·군

- 시·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구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,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
- 시장·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」 등에 따라 수행

## 5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

### 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,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,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
  - 장비·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 
(도급공사 시행시 “건설산업기본법”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)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)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, 시·도와 사전협의 하여 시·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에 보고
  - 시·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

### 사업대상자

-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·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) 제출
-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

## 6.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

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사업추진 점검 : 분기별 1회
- 사업추진단계,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

### 시·도, 시·군

- 사업추진 점검 : 월별 1회(분기별 1회 현장점검)
- 집행 및 사후점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, 무단용도 변경 확인

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

- 시·군은 예산 이월·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·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·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

- 시장·군수는 사업자 선정\*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

\*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(공문 시행일) 기준

- 시장·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(별지 제4호 서식)를 시·도를 경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 보고
-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(영수증 등)를 철저히 확인하고,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·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·제16조에 따라 관리

- 「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」 등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을 준용

- 기타사항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(훈령 제352호)을 준용

재산명	사후관리기간	처분제한 기준
건축물	10년	○ 시장·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,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·용도변경·양도·교환·대여·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
기기	5년	

《제 재》

**시·도, 시·군**
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·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·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

- 시장·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
- (포기)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
- (이월)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

\* 단,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,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

- 보고체계 :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농림축산식품부

#### □ 사업수요조사

- 시·도지사는 시·군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(엑셀양식)으로 농식품부로 제출(전년도 5월)
  - \* 전년도 3~4월중 시·도(시·군)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전년도 5월까지 공문 제출
- 보고체계 :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농림축산식품부

<별지 제1호 서식>

\*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

<b>‘00년 특용작물(버섯·녹차·약용작물 등)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</b>						
일반 현황	유형 (해당유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		단체(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조합,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회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자단체)		
	사업신청자명 (개인·법인명)	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
	대 표 자	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
	재배작물			재배규모	m <sup>2</sup>	
	소속 농가수			사업참여 농가수		
	주 소			사업장 주소		
	연 락 처	전화)	휴대전화)		전자우편)	
시설 규모	재배시설	간이(비닐)재배사 m <sup>2</sup>	판넬재배사 m <sup>2</sup>	콘크리트재배사 m <sup>2</sup>	기 타 m <sup>2</sup>	계 m <sup>2</sup>
	부대시설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기 타 m <sup>2</sup>	계 m <sup>2</sup>
	생산기기	식	식	식	식	계 식
사업 계획	사업규모 (천원)	재배시설(재배사)		*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(필요시 별지 작성)		
		생산기기 등		*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(필요시 별지 작성)		
	재원조달 (천원)	합계	국 고			지방비
		(소계)	보조	용자		
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 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자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</div>						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
구비서류 : 사업계획서 1부						수수료 없음

<별지 제1-1호 서식>

\*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

'00년 특용작물(버섯·녹차·약용작물 등)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

1. 신청자 현황

가. 사업자 현황

단지(단체)명					대표자명		
주소							
일반전화			휴대전화			모사전송(FAX)	
재배품목				회원농가수	호		
단지규모	m <sup>2</sup>	시설재배규모	m <sup>2</sup>	수출참여규모	m <sup>2</sup>		
기 지원액 (백만원)	지원연도	년	사업명				
	계	국고	응자	지방비	자부담		

나. 생산현황

구 분	품목별 재배면적 (바닥면적 기준)		품목별 생산량		소 득 액 (백만원)	수출현황		
	품목	면적(m <sup>2</sup> )	품목	생산량(톤)		수출량	수출금액	수출국가
'19(실적)	합계		합계		합계 :			
'20(계획)								

\*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,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

2.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

생산시설	계	간이재배사	판넬재배사	콘크리트재배사	기타			
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	
부대시설	집하시설	선별시설	예냉시설	저온저장고	일반창고	기타		
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대		
생산기기								
사업실적	품 목 별	출 하 실 적				GAP, 품질인증 등 (톤, %)	규격출하 (톤, %)	당기순이익 (백만원)
		계	공동출하	개별출하	수출			
	'21년	물량 (톤)				/	/	
	금액 (백만)				/	/		











<별지 제5호 서식>

\*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

'00년 특용작물(버섯·녹차·약용작물 등)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						
일반 현황	유형 (해당유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	단체(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조합,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회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자단체)			
	사업신청자명 (개인·법인명)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	
	대 표 자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
	재배작물		재배규모	m <sup>2</sup>		
	소속 농가수		사업참여 농가수			
	주 소			사업장 주소		
	연 락 처	전화)	휴대전화)		전자우편)	
사업 계획	당초	종 류	사업내용	규모(m <sup>2</sup> ) 및 수량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 간)
		재배사 개·보수				월별 작성
		재배사 증·개축				'23.3월
		시설 및 장비				'23.5월
		기 타				'23.6월
	변경	종 류	사업내용	규모(m <sup>2</sup> ) 및 수량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 간)
		재배사 개·보수				월별 작성
		재배사 증·개축				'23.3월
		시설 및 장비				'23.5월
		기 타				'23.6월
변경사유 (상세히 작성)						
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			
신청자						(서명 또는 인)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
*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승인 후 추진, 사도지시는 사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						



항 목 (사업단계)	내 용	확인 여부 (O/X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수 기자재,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</li> <li>-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에 한해 2,000백만원 한도 지원(사업 신청년도 수출실적 확인 여부)</li> <li>- 토지매입비, 임차료,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(차광막 등), 농자재,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, 저온차량, 저온저장고, 예냉시설 등 유통·가공시설 제외 여부(단, 녹차·약용작물의 경우, 유통·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)</li> <li>- 산림버섯 등 임산물(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)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 확인</li> </ul>	
대상자 확정시(공지)	<p>&lt; 「기본규정」 제51조, 제52조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대상자 확정 공시</li> </ul>	
사업 집행	<p>교부 통지</p> <p>&lt; 「보조금법」 제18조, 「기본규정」 제56조 별지 제7호서식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, 교부 취소, 환수, 제제 및 벌칙 등 조건 명시</li> </ul>	
	<p>집행</p> <p>&lt; 「보조금법」 제34조, 「기본규정」 제54조, 제58조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부받은 보조금(간접보조금)에 대해 별도 계정(수시 입출금 가능, 원금 보장, 담보설정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) 설정,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</li> <li>- 법령에서 제시한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(e나라도움 등록)</li> </ul>	
	<p>계약</p> <p>&lt; 「기본규정」 제57조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또는 조달청·지자체 위탁 계약 대상</li> <li>*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, ②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(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)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, ③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, ④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</li> </ul>	
사업 정산	<p>정산</p> <p>&lt; 「보조금법」 제27조, 「기본규정」 제58조, 제59조 &gt;</p> <p>사업 완료시, 폐지 승인시, 회계연도 끝났을 시 2개월 이내(지자체 3개월)에 정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</li> <li>- 보조금(간접보조금)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</li> <li>- 농업 경영정보의 등록 유지 여부 확인</li> </ul>	
	<p>반납</p> <p>&lt; 「기본규정」 제63조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집행잔액, 이자발생액,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조치</li> </ul>	
	<p>자료 보관</p> <p>&lt; 「보조금법」 제25조제3항 &gt;</p> <p>보조사업(간접보조사업) 수행과 관련된 자료(계산서, 증거서류 등)는 5년간 보관</p>	
사후 관리	<p>정보 공시</p> <p>&lt; 「보조금법」 제26조의10, 「기본규정」 제64조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조사업(간접보조사업)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,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 공시(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시 시정명령 조치)</li> </ul>	
	<p>중요 재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요재산 취득 후 보고(「보조금법」 제35조, 「기본규정」 제60조, 제76조)</li> <li>- 중요재산 부기등기(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)</li> <li>- 중요재산 사후관리, 처분제한(「기본규정」 제76조, 제77조)</li> </ul>	
	<p>기타</p> <p>관리책임자 지정, 사업안내문표준안 부착, 수시 확인·점검, 합동점검, 경영장부 기록 비치,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(「기본규정」 제72조, 제73조, 제75조제5항)</p>	

<붙임 제2호 서식>

\*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

**특용작물(버섯등)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기준표**

- 사업자명: (대표자: )  총득점: ( ) 점
- 사업내용: 재배사 개보수 00m<sup>2</sup>
- 사업예산: ( )백만원
-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 여부
-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, 농산물전문생산단지, 수출 우수 농가(여/부)
  -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여/부)
  -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(여/부)
  - 농산물자조금 납부(여/부)

평가항목	등급					평점
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	
1.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(40점) *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(설계서, 견적서 등 포함)	40	35	25	15	5	
2. 사업비 확보 가능성 (40점) * 사업계획서, 협동체제 구축 관련 자료	40	35	25	15	5	
3. 상반기 사업착수 가능성 (20점)	20	15	10	5	0	
4. 지원자격 및 요건	충족 ( ) / 미충족 ( )					충족/ 미충족
5.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	대상 ( ) / 미대상 ( )					대상/ 미대상
6. 신청지원 이력	- 지원횟수, 지원년도, 사업내용 등 기재 * 동일사업 지원가능 횟수 : 최대 3회까지 인정					가능/ 불가능
합 계	( )점 / 100점					
사업추진일정	- '23.2~3월 : 장비구입 입찰 공고 등 - '23.4월 : 00백만원 집행 예정					